

[서식 예] 이행명령신청서

이행명령신청서

신 청 인 한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박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○지방법원 2013. 10. 28.자 2012드단○○○○(본소), 2013드단○○○○(반소)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라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1. 당사자의 관계

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. 12. 13. 혼인신고를 경료한 법률상 부부였는바, 8년에 걸친 혼인생활 끝에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〇〇〇〇(본소), 2013드단〇〇〇〇(반



소)호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한편,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자 녀로 신청외 한○○(06. 2. 21.생), 한○○(08. 12. 3.생)가 있습니다.

2. 면접교섭허용의무의 발생

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소송절차 중 2010. 10. 28.자 조정 기일에서 '피고(신청인)는 매월 둘째・넷째 일요일 10:00부터 19:00까지 피고(신청인)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, 추가로 사건본인들의 여름・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. 원고(피신청인)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'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으며 위 내용 그대로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.

3.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

그런데 신청인이 위 조정조서 상의 다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, 피신청인은 위 조정 성립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,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일관하고 있어 신청인이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(피신청인이 신청인과자녀들의 전화통화 마저 제한하고 있어 신청인으로서는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). 즉,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할 것입니다.

4. 결어

이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이건 이행명령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니,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.

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

1. 소갑 제2호증

1. 소갑 제3호증

조정조서

송달증명원

문자메시지 자료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

1. 소송 위임장

1. 송달료 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15. 9. .

위 신청인 (인)

수원지방법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(1) 참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 관련 법 규 가사소송법 제64조
	가정법원은 판결, 심판,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
요 건	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
	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비 용	· 인지액 : 1,000원(로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
	1. 가사소송법 제67조【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】
	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, 제63조의2제1항, 제63
	조의3제1항·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
	는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
	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	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
	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
	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(監置)를 명할
_	수 있다.
의 무	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불이행자에	2. 가사소송법 68조【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】
대한 제재	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
	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.
	1.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(期) 이상 그
	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	2.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
	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	3.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
	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	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1	

※ (1) 제출법원

1.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경우

(단,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)

- 가.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
- 나. 유아의 인도 의무 위반,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

2.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경우

(단,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)

- 위 가. 나. 이외의 의무위반